

의안 번호	2113	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(연장) 민간위탁 동의안 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6. 13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6. 13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6. 21.(수)

2. 제안이유

-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시설 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기 위해
- 『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
- 나. 위탁사무의 내용
 - 현수막 설치 및 철거 등 유지관리 업무
 -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민원서류 접수 대행
 - 현수막지정게시대 순찰·관리 등
- 다. 위탁기간 : 2023. 7. 1. ~ 2026. 6. 30.(3년간)

4. 근거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3
- 「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3항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- 본 위탁 동의안은 2023. 6. 30. 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 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3(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)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·연구
2.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·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
3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
2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

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제12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1.>

1. 지정게시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.
2.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,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해야 하며, 색깔은 무채색·저명도·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.
3. 지정게시대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.

4.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.
5.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 해야 한다.
6.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7.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, 공개 추첨,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, 구청장·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8.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6조 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 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